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. 11. 10 선고 2020가단1055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

담당변호사 김진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수영

피고B지역주택조합

변론 종결2020. 10. 27.

판결 선고2020. 11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9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문헌호

별지